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6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3일

발 의 자 : 김경영, 고병국, 김경우,
김생환, 김제리, 김화숙,
문병훈, 박기재, 서윤기,
송아량, 유 용, 이정인,
임종국, 정진술, 추승우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뉴딜일자리 등 자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한시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 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4차 산업혁명(「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시 투자·출연기관”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u></p>
<p>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4차 산업혁명(「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u></p> <p><u>10. (현행 제9호와 같음)</u></p> <p>③ (현행과 같음)</p>
<p>9. (생략)</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4조의2(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u></p>

· 연구)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생략)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 서울특별시
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2021100500000010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경영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05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제4조제2항제9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
 - ※제3조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며 제7조제2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노동자의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689,100천원으로 연평균 337,8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조사(=실태조사)는 3년에 1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수요조사 비용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실태조사비를 참고하여 추계
 - 직무·고용모델개발비용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직무개발 및 컨설팅 비용을 참고·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689,100천원

- 총 비용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비+직무·고용 모델 개발비+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비+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지원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 (a)	-	-	-	-	-	-	-
세출	제4조의2제1항제1호 (수요조사비)	20,000				20,000		40,000
	제4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직무·고용모델개발비)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제4조의2제1항제5호 (조사 및 연구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제7조제1항제4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교육지원비)	93,820	93,820	93,820	93,820	93,820	93,820	469,100
	소계 (b)	349,820	329,820	329,820	349,820	329,820	329,820	1,689,100
총비용(b-a)			349,820	329,820	329,820	349,820	329,820	1,689,100

○ 수요조사비 ≒ 40,000천원

$$= 20,000\text{천원} \times 2\text{회}$$

※ 2021년 도시교통실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현황 실태조사비 20,000천원

○ 직무·고용모델 개발비 ≒ 430,000천원

$$= 86,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2021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직무개발비 1개소당 86,000천원

○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비 ≒ 750,000천원

$$= 150,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2021년 복지정책실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개입 등 연구비 150,000천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지원비 ≒ 469,100천원

$$= 93,820\text{천원} \times 5\text{년}$$

※ 2021년 복지정책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비 기관 1개소당 93,82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